

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의 견 서

(의안번호 제2805호)

- 시민협력국 국장 이원목입니다.

-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,
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, 여러분!

- 오늘 시민협력국 소관 사안으로
김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805호,
「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」 일부
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본 개정조례안은
마을공동체 사업에 투입되는 마을자원에 대한 인정기준
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.

-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입된 유·무형 마을자원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것을 개선하고, 궁극적으로 마을자원 인정을 통해 주민주도의 마을자원 발굴·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

- 이러한 마을자원 인정 기준 마련은 실질적인 마을공동체 자생력과 역량을 높이는 단초가 될 것으로 예상하므로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바임을 말씀드립니다.

-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
2021. 11.

시민협력국 국장 이원목